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 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 (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9년 7월 2일

나. 회부일자 : 1999년 7월 2일

3. 제안이유

가. 지방공기업법령이 개정(법개정 1999. 1. 29, 법률 제5708호, 영개정 1999. 3. 31, 대통령령 제16213호) 됨에 따라

나. 법령개정 사항과 기타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의료원의 정관변경 인가권을 행정자치부장관에서 도지사로 변경

- 나. 의료원의 원장후보 추천권을 이사회에서 지방공사의 장 후보추천위원회로 변경
- 다. 감사 임면권을 의료원장에서 도지사로 변경하고, 감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라. 의료원장의 임기보장규정 신설
- 리. 의료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있어 도지사 승인 사항을 사후보고로 변경

5. 검토의견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인가권·승인권등 중앙의 각종 규제를 철폐함과 동시에 지방공기업 경영상의 책임성, 전문성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지방공기업법(법률 제5708호 1999. 1. 29)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213호 1999. 3. 31)을 각각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내용중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원의 정관변경 인가권을 행정자치부장관에서 도지사로 하고(안 제5조)
- 의료원장의 추천은 이사회에서 하던 것을 충청북도 지방공사의 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하도록 하였고, 감사가 독립적 지위에서 공정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그 임면권을 행정자치부장관에서 도지사로 변경하고 그 임기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함(안 제8조)
- 책임경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원장의 임기보장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9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도지사 사전 승인을 사후승인으로 함(안 제21조)
- 또한 조례제정의 개정, 안 제1조의 병원을 의료원으로 기관명칭 변경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음.

붙임

-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 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